

산학협력중점교원에 관한 규정

제정일 : 2016. 8. 11

개정일 : 2017. 2. 22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 6항에 의거, 광운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용 및 업적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7. 2. 22>

제2조(정의) 산학협력중점교원이라 함은 본교의 학과(부), 대학원, 연구소 및 관련부서 등에 소속되어 산학연계 연구·교육·봉사 활동, 산학협력사업 및 대외협력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,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교원의 구분)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임용형태에 따라 채용형 교원과 지정형 교원으로 구분한다.

② 채용형 교원은 최초 임용 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한 교원으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.

③ 채용형 전임교원은 특별전임교원(산학협력트랙)에 한하며, 그 직위는 「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」에 따르고, 비전임교원의 경우는 「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」에 준하여 정한다.

④ 지정형 교원은 본교의 전임교원중 산학연계 교육·연구 진작 및 산학협력목적으로 지정된 교원을 말한다.

제4조(자격) ①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,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연구기관, 민간산업체 등 전공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.

②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산업체 경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, 신규임용 교원은 최초 계약기간 동안은 신청할 수 없다.<개정 2017. 2. 22>

③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전일제로 근무하여야 하며, 본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타 기관 또는 사업체 소속은 불허한다.

제5조(채용 또는 지정 절차)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채용 및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① 채용형 전임교원의 채용 심사방법은 교원신규 임용내규 및 산학협력중점교원 채용절차「별표1」에 따른다.

② 채용형 비전임교원의 채용 심사방법은 「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③ 지정형 전임교원은 재직중인 전임교원중 산학협력사업 추진에 적합한 교원으로 해당 학과 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
제6조(채용 구비서류)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 임용을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원서
2. 학력 및 경력 증명서
3. 산학협력 관련 실적목록
4. 산학협력 활동계획서
5. 기타 해당 부서 요구 서류

제7조(계약기간) ① 채용형 전임교원의 계약기간은 관련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 후 본교의 「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다.

② 채용형 비전임교원의 계약은 본교「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」에 따르며,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③ 지정형 전임교원 임명은 2년 기간으로 하고, 본인의 연장 요청 또는 필요 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

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.(단, 임명해제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다.)

제8조(업무) 산학협력 중점교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

1. 산학협력 연구 활동
 - 가. 기술이전
 - 나.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
 - 다. 대외 연구비 수주 및 수주지원
 - 라. 기업부설연구소 유치
 - 마. 교원 창업
 - 바. 신기술·제품 인증
 - 사. 산학협력 기금 유치
 - 아. 기타 산학협력 관련 연구 활동
2. 산학협력 (학부/대학원)교육활동
 - 가. 현장실습지도
 - 나. 캡스톤 디자인 지도
 - 다.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
 - 라. 산학연계 교과목 개설
 - 마. 학생창업지도
 - 바. 산학인턴연계
 - 사. 학생 취업연계
 - 아. 기타 산학협력 관련 교육 활동
3. 산학협력 봉사활동
 - 가. 산업체 전문지도
 - 나.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
 - 다. 산학협력 협의체 발굴 및 협력
 - 라. 기술 및 장비활용 연계
 - 마. 기타 산학협력 관련 봉사활동
4. 산학협력사업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추진 활동
 - 가. 사업 발굴 및 기획
 - 나. 제안서 작성
 - 다. 정보 수집
 - 라. 기타 대외협력사업 관련 활동
5. 기타 본교 산학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

제9조(처우) ① 채용형 전임교원의 보수를 포함한 처우는 개별적인 계약으로 정한다. 단,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 본교의 「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② 채용형 비전임교원의 처우는 계약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. 단 보수는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, 산학협력중점교원 채용을 필수로 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중 국고지원에서 충당이 어려운 보수에 한해 교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업무수행 계획서) ① 채용형 비전임교원은 계약시 계약기간 동안의 복무와 관련하여 [별표6]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업무수행계획서에는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수행업무와 관련한 계획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.

제11조(책임강의시간) ①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교원인사 규정 제21조(책임시간)에도 불구하고, 일반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의 30%이상을 감면하여 계약으로 정한다. (단,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주당 3시간 이하로 한다.)

② 비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간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(승진 및 재임용) 전임교원은 본교「교원인사규정」및「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」에 따르며,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산학협력분야의 점수 합이 연 평균 250점이상이어야 한다. 단, 수학과, 생활체육학과, 인문사회대학, 경영대학, 법과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산학협력분야의 점수 합이 연 평균 185점 이상이어야 한다. (단, 인제니움학부대학, 광운한림원, 특수대학원, 야간학과 및 계약학과 소속 전임교원은 해당 교원의 전공과 일치하는 학과(부)의 기준을 적용하며, 전공이 일치하는 학부과정이 존재하지 않을 시, 소속기관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장 근접한 전공학과(부) 기준을 적용한다.)

제13조(교내외 활동) ① 채용형 교원은 본교 소속으로 외부지원사업을 책임자로 지원할 수 있으며, 대학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라야한다.

② 채용형 교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 시 보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제14조(해임) ① 전임교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「교원인사 규정」에 따른다.

- ② 채용형 비전임교원은 발령기간이 만료되고 계약 연장이 안 된 경우 당연히 퇴직되며 별도의 퇴직통보를 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(보직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「교원인사 규정」, 「특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」을 준용하거나 별도로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산학협력중점교원 채용 절차<개정 2017. 2. 22>

채용절차	가형(해당부서 추진유형)		나형(대학원) 추진유형)		비고
	담당부서	내용	담당부서	내용	
① 채용공고	해당부서	공고	단과대학	공고	
② 서류접수	해당부서	접수	단과대학	접수	
③ 1차심사	해당부서	기초심사	단과대학	기초심사	
④ 2차심사	해당부서	채용 유형별 서류심사 진행	단과대학	채용 학과별 서류심사 진행	1차, 2차 통합 가능
⑤ 3차심사(면접심사)	해당부서	특별임용위원회	단과대학	특별임용위원회	해당기관장(학 장), 학과장, 관련교원,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참석
⑥ 교원인사위원회	교무처	해당 절차 진행	교무처	해당 절차 진행	
⑦ 총장 면담					
⑧ 이사장 임용					

※ 심사위원 구성

- 1차 및 2차심사시 심사위원은 내·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, 내부심사위원은 해당 학과(부서)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본교에 임용된 지 2년 이상인 해당 학과(부)의 전공분야(또는 유사 전공분야)의 전임교원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.
- 당연직 및 위촉직 내부 심사위원의 총 인원은 해당 학과(부) 전임교원수가 8명 이하일 경우 4명, 9명 이상일 경우 6명으로 한다. 단, 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전임교원수가 4명 미만인 학과(부)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이 신청하고 총장이 승인에 의하여 유사분야를 전공한 타 학과의 교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외부 심사위원은 내부 심사위원 수의 1/3이상으로 한다.

[별표 3]

내부심사용-산학협력중점교원 응모자 심사 보고서(2차)

학과부전공		초빙분야	
심사 대상자	성명	생년월일	성별 남.여

평가항목	평가내용	점수	기준점	배점
1. 산학협력실적 평가	•교내 산학협력실적평정표를 활용하여 평가 후 20점 만점으로 환산(20점)		(해당자 산학협력점수/ (1차통과자 최고점수) * 20	60
	•산학협력실적 질적평가 (40점)		탁월 35~40점, 우수 30~34점, 보통 15~29점, 부족 10~14점, 미달 5~9점	
2. 공개발표 평가	1)발표내용 구성 및 논리성 (10점)		탁월 8~10점, 보통 5~7점, 미달 2~4점	30
	2)표현력 및 의사 전달력 (10점)			
	3)발표태도 (10점)			
3. 인성평가	1)교육자로서의 인격과 잠재력 (5점)		탁월 5점, 보통 3점, 미달 1점	10
	2)임용 후 산학협력계획 (5점)			
총 점	점 / 100점			

심사의견				
-------------	--	--	--	--

심사위원	소속	직급	성명	(인)
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

※ 최근 4년간의 실적만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.
 ※ 정성적 평가 의견 및 기타사항을 심사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
 ※ 각 평가항목별 심사점수가 해당 배점의 50% 이하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심사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※ 심사위원은 개별심사 후 밀봉하여 소속기관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.
 ※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인비로 처리하여 주십시오.

[별표 4]<개정 2017. 2. 22>

외부심사용-산학협력중점교원 응모자 심사 보고서(2차)

학과부전공		초빙분야	
심사 대상자	성명	생년월일	(세) 성별 남.여

평가항목	평가내용	점수	기준점	배점
1. 산학협력실적 평가	•교내 산학협력실적평정표를 활용하여 평가 후 20점 만점으로 환산(20점)		(해당자 산학협력점수)/ (1차통과자 최고점수) * 20	60
	•산학협력실적 질적평가 (40점)		탁월 35~40점, 우수 30~34점, 보통 15~29점, 부족 10~14점, 미달 5~9점	
2. 산학협력 활동 계획 평가	1)산학협력 활동 계획의 적절성 (10점)		탁월 8~10점, 보통 5~7점, 미달 2~4점	20
	2)산학협력 활동 계획의 대학 기여도 (10점)			
3. 산학협력 역량평가	1)산학협력 잠재력 (10점)		탁월 8~10점, 보통 5~7점, 미달 2~4점	20
	2)임용 후 산학협력계획 (10점)			
총 점	점 / 100점			
심사의견				
심사위원	소속	직급	성명	(인)
※ 최근 4년간의 실적만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. ※ 정성적 평가 의견 및 기타사항을 심사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 ※ 각 평가항목별 심사점수가 해당 배점의 50% 이하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를 심사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심사위원은 개별심사 후 밀봉하여 해당기관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. ※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인비로 처리하여 주십시오.				

[별표 5]

산학협력중점교원 응모자 심사 보고서(3차)

학과부전공			초빙분야		
심사 대상자	성명		생년월일	. . . (세)	성별 남.여

평가항목	배점	점수
교육자로서의 자질 및 가치관	30	
의사소통능력, 발표역량	20	
대학 및 학과 발전 기여 가능성	30	
사회봉사 기여역량	20	
총 점	점 / 100점	

심사 의견

심사위원	소속		직급		성명	(인)
------	----	--	----	--	----	-----

※ 종합평가 의견 및 기타사항을 심사의견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.
 ※ 심사위원은 개별심사 후 밀봉하여 소속기관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.
 ※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인비로 처리하여 주십시오.

[별표 6]<개정 2017. 2. 22>

산학협력 중점교원 업무수행 계획서

성명		직종	
소속		임용(계약)기간	

구분	세부 항목	업무수행 계획	비고
산학협력 실적			교수업적 평가규정 [별표1] 4. 산학협력 분야 기준 참조

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임용되어 위와 같이 업무수행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.

년 월 일 (작성자) (인)

[별표 7]

산학협력 활동계획서

성명	소속	생년월일	지원분야
<p>1. 본교 산학연협력 활성화 및 실적제고를 위한 수행계획 작성</p> <p>2. 기타 산학연협력 계획 등</p>			

※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페이지를 추가하여 기재 가능함